



국민의 나라 철의료운 대한민국



보다 나은 정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겸유)

제목 과태료 처분 보고(알림)[코스맥스(주) 등 3개소 제조관리자]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조관리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코스맥스(주)	이훈식		
(주)한국비오스제약	홍문순	「약사법」 제37조의2 위반 - 제조관리자 교육미이수	과태료 50만원 (납부기한: 19.6.27.)
(주)씨티코스메틱	동홍성		

붙임. 과태료 부과처분서 각 1부, 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인정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외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해사법률항조사단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서울특별시(의약외품안전처장(의약외품안전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정책과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수출입협회장, 한국소비자원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을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전결 2019.5.27.

주무관	김승경	사무관	최경식	운영지원과장	조건부
협조자 주무관	이소영				
시행 문영지원파-7655		(2019. 5. 27.)	접수		
우 13809	경기도 파주시 관문로 4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동암동)	/ 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2-2110-8019	팩스번호 02-2110-0801	/ ksk0534@korea.kr		/ 비공개(5,7)	
일자리가 설정이고 복지입니다.					

과태료부과처분서

1. 업체현황

- 업체명 : 코스맥스(주) (의약외품 제조업)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27, 2길 46
- 제조관리자 : 이 훈식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500,000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 2019. 6. 27.까지)

3. 처분사유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1주기('13.1.1.~'14.12.31.) 교육 미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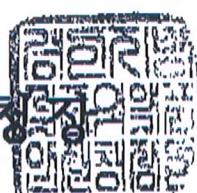
4. 근거법령

- 「약사법」 [법률 제12450호] 제37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98호] 제44조
- 「약사법」 [법률 제12450호] 제98조제1항제4호의2,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62호] 제39조 관련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제4호의2

5.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판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5. 2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태료부과처분서

1. 업체현황

- 업체명 : (주)한국비오스제약 (의약외품 제조업)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2동 606호
- 제조관리자 : 홍문순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500,000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 2019. 6. 27.까지)

3. 처분사유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2주기('15.1.1.~'16.12.31.)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약사법」 [법률 제13655호] 제37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298호] 제44조
- 「약사법」 [법률 제13655호] 제98조제1항제4호의2,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3호]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자목

- 5.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
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5. 2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부과처분서

1. 업체현황

- 업체명 : (주)씨티코스메틱 (의약외품 제조업)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324번길 39
- 제조관리자 : 둉 흥 성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오십만원(₩500,000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 2019. 6. 27.까지)

3. 처분사유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교육이수기한 : 2017.09.03.

4. 근거법령

- 「약사법」 [법률 제14839호] 제37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330호] 제44조
- 「약사법」 [법률 제14839호] 제98조제1항제4호의2,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자목

5.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5. 2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